



청 구 취 지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유

원고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229 재심청구의 소가 2012. 5. 23.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(재심대상판결), 그 판결이 2012. 8. 30.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(대법원 2012두12358호 사건)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, 서울행정법원 2000. 5. 12. 선고 99구23983 사건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도 그 사건의 판결문에 증거에 관한 기재가 잘못되었다거나 증거 판단의 오류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있다는 취지인데,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.

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용호 _____

 판사 이원신 _____

 판사 신동훈 _____





정본입니다.

2013. 1. 18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윤 병 관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(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